

# 微生物寄託 및 生物工學發明의 特

## 寄託의 必要性 및 日本에서의 寄託시스

(前號에서 계속)

### 라. 하이브리도마

예를들면 Kohlor와 Milstein方法을 사용하여 상업적으  
로 구입 가능한 세포로 부터 抗原을 전통적인 方法으로  
제작하여 BALB/C쥐에 주사하여 지라세포를 잘라  
내어서 알세포와 PEG를 사용하여 융합시켜 하이브리  
도마를 생성하는 전통적인 하이브리도마 제조에 관한  
發明으로 이들 생성된 하브리도마 세포중 5%이상이  
단일 항체를 생산하였고, 스크린은 전통적 방법이며 생  
성된 抗體는 샌드위치 애세이에 적합한 경우에 도표 4  
에서 보는바와 같이 請求된 發明이 抗原하이브리도마  
單一抗體 自體인 경우도 그 반복재현성이 인정되고 통  
상의 方法으로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그 寄託을 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이브리도마 제  
조시 사용된 出發細胞가 신규하고 제조과정이 반복재  
현하기 어려운 경우에 청구된 발명과 관련된 細胞를 寄託  
하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도표 4〉 寄託要求性

請求範圍	實施可能	明細書記載	Best Mode
抗原	×	×	×
하이브리도마	×	×	×
單一抗體	×	×	×
單一抗體 사용한 Assay	×	×	×

### 마. 再組合 DNA로 형질전환된 속주

예를들면 잘알려진 *Bacillus Subtilis*로부터 펩타이  
드를 암호하는 구조유전자를 분리하고, 이遺傳子는 시  
행성되고 그 길이는 1KB정도임을 나타내고 이론 PBR  
322에 삽입하여 공지의 속주세포에 도입시키고 이때생  
성된 형질전환 세포를 단백질이 잘발현되는 배양조건

에서 배양하는 發明이 있다고 하면 이경우는 도표 5에  
서 보듯이 請求된 發明이 구조 遺傳子 속주세포 형질  
전환체, 형질전환체의 사용용도 펩타이드 등이라해도  
관련세포를 寄託하지 아니해도 發明의 충분한 開示要  
件을 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출발세포 또는 속주가 明  
細書에 특정되어 명료하기 재되어지 않거나 용이하게 입  
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히 이를 세포를 寄託하여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도표 5〉 寄託要求性

請求範圍	實施可能	明細書記載	Best Mode
構造遺傳子	×	×	×
속주	×	×	×
形質轉換體	×	×	×
펩타이드 製造를 위한 形質轉換體 의 使用(用途)	×	×	×
펩타이드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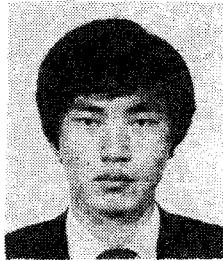
### 4. 日本에서의 寄託例

日本의 경우 기본적으로 당해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  
野에서 통상의 技術者에 의해 容易하게入手가능한 微  
生物이 아닌 경우는 그 微生物을 使用한 發明의 特許  
出願前 당해 微生物을 寄託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出願書에 첨부하고 出願 明細書에 그 寄託번호를 記載  
하도록 日本 特許法 施行規則 第27條의 2(微生物의 寄  
託)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寄託에 관한 자세한 内容은 應用微生物工業 審  
查基準 改正2판, 1982年 8月의 微生物 自體에 審查에  
관한 基準, 1976年 10月의 物質特許와 多項制에 관한  
基準中 化學物質·醫藥·食品·飲料·기호를 發明에  
한 절차, 遺傳工學 관련 發明의 審查를 위한 시험안(초  
과안)등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 許性(2)

## 템 中心



朴炳錫

〈特許廳 審查官〉

이들중에서 應用 微生物 工學 審查基準과 遺傳工學  
관련 發明의 審查를 위한 시험안을 中心으로 하여 寄託에  
관한例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應用 微生物 工業 審查基準에 나타난 容易하게 入手할 수 있는 微生物의 例示

應用 微生物 工學 審查基準에서 微生物 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者が 容易하게入手할 수 있는 微生物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商業的으로入手가능한 微生物인 番酵母·國麴  
(*Aspergillus oryzae*)·*Bacillus natto* 등 市販되고  
있는 微生物 및

2) 特許 出願 당시에 신뢰할 수 있는 保存機關에 보  
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유로이 분양이 가능한 微生物(표준 보관균주를 포함).

1)과 2)의 두 경우의 微生物은 特許 出願時 出願發明에 利用되었다 하더라도 寄託의 對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를 微生物 당해 技術分野 통상의 지식을 가진者라면 누구나 容易하게入手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다.

다음은 "Patents & Licensing"(1987年 2月)에 게재된 "遺傳工學에 關한 發明의 審查를 위한 시험적인 가이드라인(초안)"의 内容中에서 遺傳工學 發明과 微生物의 寄託에 관한 事項을 要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나. 遺傳工學 發明에 있어서 微生物의 寄託

#### 1) 形質轉換體의 發明

(1) 遺傳子 組合에 의해 微生物로 부터 製造된 形質轉換體의 發明에 있어서, 당해 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인이 容易하게 형질전환체를 再現시킬 수 있도록 그製造過程을 記載할 수 있는 경우에는 出願書内 그 제조과정을 기재함과 동시에 이 형질전환체의 제조과정에 使用되는 微生物이 당해 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者에 의해 容易하게入手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際寄託機關 또는 特許廳長이 지정하는 國內寄託機關에

## 論壇 角言說

### ■ 目次 ■

- I. 머리말
- II. 寄託 制度
- III. 發明의 開示
- IV. 生物工學 發明의 特許性
- V. 特許戰略
- VI. 맷는말

〈고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 및 다음 號〉

寄託을 하고 出願書에 그 기탁번호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形質轉換體의 發明에 있어서, 당해 技術分野 통상의 지식을 가진者에 의해 容易하게 그 製造過程을 再現시킬 수 있도록 記載하기가 어려운 形質轉換體의 發明을 한 경우에는 이 微生物을 寄託하고 최초 出願된 明細書내에 寄託번호를 記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形質轉換體의 發明에 있어서 당해 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容易하게 製造할 수 있도록 明細書가 記載되고 또한 그 제조를 위해 使用되는 微生物이 容易하게 이들에게入手되는 경우는 그形質轉換體의 寄託이 반드시 義務의이지는 않다. 그러나 그 제조 과정이 容易하게 實施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경우라도 중간제조과정에 사용된 微生物이 容易하게入手할 수 없을 때 또는 그 全體 製造過程이 명료히 기재할 수 없는 때에는 寄託을 要求한다.

#### 2) 外來遺傳子, 백터, 組合백터의 發明

(1) 외래유전자·백터·조합백터의 發明에 있어서는 그러한 製造過程을 당해 분야 통상의 기술자가 再現할 수 있도록 出願當初의 明細書에 記載함과 同時に 그 製造를 위하여 使用된 微生物이 당해 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者에 의해 容易하게入手할 수 없는 것인 境遇에는 그 微生物을 寄託하고 그 寄託番號를 出願當初의 明細書에 記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외래유전자·백터·조합백터의 發明에 있어서 그들의 製造過程을 통해 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者が 再現할 수 있도록 明細書에 記載하는 것이 困難한 境遇에는 製造된 外來遺傳子·백터·조합백터가導入된 微生物을 寄託하고 그 寄託番號를 出願當初의 明細書에 記載함으로서 製造된 外來遺傳子·백터·조합백터의 提供手段을明白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 論壇解說

즉, 外來遺傳子·벡터·組合벡터의 發明에 있어서도 이들의 寄託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形質轉換體의 發明에서 寄託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外來遺傳子의 경우 이 유전자 自體를 寄託할 수 없으므로 이 유전자가 함유되거나 도입된 微生物을 寄託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遺傳子·벡터의 DNA(혹은 RNA) 염기서열이 구체적으로 明示되고 다른 微生物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고 化學的으로 合成된 發明에서는 반드시 이들의 寄託이 義務의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化學的으로 合成한 경우는 그 製造方法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開示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등하게 化學合成可能한 비교적 짧은 단편의 DNA(RNA)의 경우는 그 염기서열이 明示되고 過渡한 실험량을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경우이므로 반드시 그 寄託을 要求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3) 外來遺傳子·벡터·組合벡터·形質轉換體의 製造方法의 發明

外來遺傳子·벡터·形質轉換體의 製造方法의 發明에 있어서는 이들의 製造過程을 당해 技術分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者が 再現할 수 있도록 出願當初의 明細書에 記載함과 同時に 그 製造를 위하여 使用한 微生物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者에 의해 容易하게入手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微生物을 寄託하고, 그 寄託番號를 出願當初의 明細書에 記載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製造方法의 發明을 클레임에서 請求하면서 明細書에 그 製造過程이 당해 분야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반복 實施할 수 있도록 명료히 記載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두말 할 필요도 없이 그 製造方法 클레임은 特許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제3의 發明인 텁製法이 명료히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당연히 特許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製造方法 發明이 容易하게入手할 수 없는 微生物의 使用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產物自體인 遺傳子·벡터·형질전환체의 發明을 請求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여 使用된 微生物의 寄託이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寄託은 반드시 必要한 것이다.

따라서 寄託의 해야 할지 하지 않아도 될지의 판단은 發明이 產物(Product) 自體이거나 製造方法이거나에 의해서 단순히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 發明에서 使用한 微生物이 당해 분야 통상의 技術者에 의해서 容易하게入手 가능할지 아닌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4) 形質轉換體를 使用한 化學物質등의 製造方法의 發明

使用하는 形質轉換體를 당해 분야 통상의 技術者가 容易하게入手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1). (1) 또는 (2)에 따라서 해당 形質轉換體를 寄託하고 그 形質轉換體의入手手段을 出願當初의 明細書에 明白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發明이 微生物自體 또는 그의 製造方法에 관한 것도 아니고 단지 微生物을 배양해서 이들로부터 生產되는 化學物質의 製造方法에 관한 것이라해도 形質轉換體의 寄託이 없이는 당해 기술분야 통상의 技術者에 의해서 容易하게入手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形質轉換體의 기탁이 이루어져야 일반인이 이러한 發明을 再現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特許出願書에 記載된 바에 따라 당해 기술분야 사람들에 의해 容易하게 制造가 되는 微生物을 利用하고 있을 때는 託託이 義務의인 것이 아니게 된다.

### 다. 遺傳工學 發明에 있어서 微生物의 寄託에 관한 圖示

다음 例示와 같은 遺傳工學 發明이 있을 때 다음 1)~2)의 두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앞에서 圖示된 發明에서 利用된 微生物(A, B, D)이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容易하게入手가 곤란하고 同時に 이 發明의 製造過程이 명료히 明細書에 記載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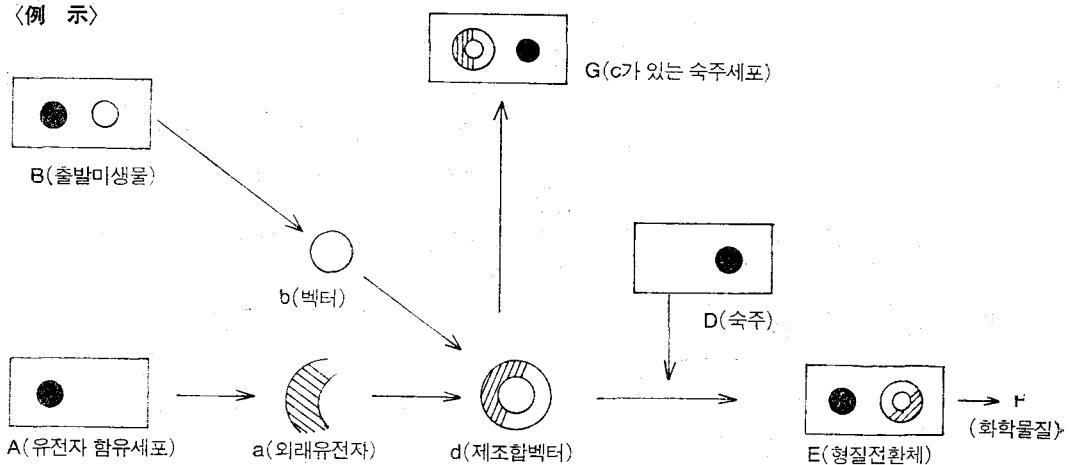
이러한 경우는 아래의 도표 6에서와 같이 각각의 發明에 對해서 그 寄託되는 微生物이 要約되어질 수 있다.

請求되는 發明이 外來遺傳子(a)인 경우는 이 유전자를 함유하고 있는 出發微生物(A)을 寄託함으로써 明細書에 記載된 製造過程에 따라서 出發微生物(A)로부터 外來遺傳子(a)를 製造하는 方法과 外來遺傳子自體의 發明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또한 發明이 ベク터(b)인 경우도 外來遺傳子의 경우처럼 出發微生物인 (B)를 기탁함으로써 가능하다.

發明이 組合벡터(C)인 경우는 (A)와 (B) 모두 필요하게 되고, 形質轉換體(E), 化學物質(F)등에 對해서는 出發細胞(A), (B) 및 속주인(D)의 寄託이 요구된다. 만약 上記한 例에서 A와 B가 容易하게入手되는 微生物인 경우라면 당연히 寄託할 細胞는 속주인 D 세포만이 해당될 것이다. 만약 A, B, D 모두가 容易入手 가능한 것이라면 위의 發明에서는 아무 微生物도 寄託이 必要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入手가능

## 〈例示〉



〈도표 6〉

發明	寄託되는 微生物
A(製法, 產物)	A
B(製法, 產物)	B
C(製法, 產物)	A 및 B
E(製法, 產物)	A, B 및 D
F(製法, 產物)	A, B 및 D

한 出發細胞로부터 명료히 記載된 製造過程에 따라 그 發明(製法 또는 產物自體)을 충분히 開示하게 되기 때문에 寄託이 必要치 않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出發細胞가入手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發明의 製造過程이 수많은 단계로 이루어져 당해 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그 發明의 再現에 過渡한 실험을 要求하는 경우는 그 發明에 관련되는 微生物의 寄託 없으므로 그 發明의 충분한 開示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당해기술분야의 기술적수준과 발명을 再現시키는데 소요되는 時間 등을 고려해서 發明의 開示가 적절하고 명료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앞에서 圖示된 發明에서 그 製造過程을 明細書에 명료히 記載할 수 있는 경우

이경우는 각각 請求되는 發明에 따라 아래 도표 7에서와 같이 寄託되는 微生物이 要約될 수 있다.

發明의 製造過程이 명료히 記載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제조방법은 特許될 수 없다. 그리고 새로운 產物(Product) 自體에 대해서는 도표7에서와 같이 寄託을 要한다. 외래유전자(a)나 백터(b)를 發明으로 하는 경우는 A 또는 B를 寄託하지 않고 E 또는 G를 寄託하고 있는 점은 아마도 출발세포인 A와 B에서 각각 a와 b를

〈도표 7〉

發明	寄託되는 微生物
A(產物)	E 또는 G
B(產物)	E 또는 G
C(產物)	E 또는 G
E(產物)	E
F(產物)	E

제조하는 製造過程이 명료히 記載되지 않기 때문에 A와 B를 寄託한다해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소한 G나 E 세포로부터는 그 외래유전자 또는 백터의 한정, 유전자지도로 인한 특정 및 분리해내는 방법의 명세서 기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물질(Product)을 特許하려면 최소한 하나이상의 제조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發明이構成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새로운 產物이 化學物質을 예로들면 그 物質自體가 바로 發明의構成이되고 有用한 物質을 提供함이 그 發明의 目的이 되고, 效果가 되는 것이다. (化學物質에 關한 一般審查基準을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 그 제조방법에 know-how가 있다면 그 제조방법이 명료히 기재되지 않아 特許되지 않고 새로운 產物만 特許되는 경우에 그 산물을 일반인 제조하기가 극히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신규한 화합물을 실험목적으로 제조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개량된 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特許制度가 發明을 完全公開라는 맷가로 發明者에게 獨占權을 부여하는 그 기본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계속〉